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24(금) 10:00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34호
- 나. 제 출 자 : 정재동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4조 제2항)
- 나. 30년 이상의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 확대(안 제14조 제4항)
 - 30년 이상 : 현행 20일 → 개정 30일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23. 10.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도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2항의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제4항의 30년 이상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참고 사항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내 16개 자치구의회에서 30년 이상의 장기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3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장기재직(30년 이상) 특별휴가 일수
 - ▶ 30일 : 16개 자치구의회
 - ▶ 25일 : 2개 자치구의회
 - ▶ 20일 : 7개 자치구의회
- 관련 법령의 근거규정 및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1부
- 2. 관련 법령 1부.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 자치구의회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30년 이상)

〈2023년 10월 기준〉

연 번	자치구의회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비 고
1	종로구	30일	
2	중 구	25일	
3	용산구	20일	
4	성동구	30일	
5	광진구	20일	
6	동대문구	30일	
7	중랑구	30일	
8	성북구	30일	
9	강북구	20일	
10	도봉구	30일	
11	노원구	30일	
12	은평구	20일	
13	서대문구	30일	
14	마포구	20일	
15	양천구	30일	
16	강서구	30일	
17	구로구	30일	
18	금천구	20일	
19	영등포구	30일	
20	동작구	20일	
21	관악구	30일	
22	서초구	25일	
23	강남구	30일	
24	송파구	30일	
25	강동구	30일	

※ 자치구의회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 30일(16개) : 종로,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강동
- 25일(2개) : 중구, 서초
- 20일(7개) : 용산, 광진, 강북, 은평, 마포, 금천, 동작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 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 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 2022.01.12 조례 제1232호

(일부개정) 2023.01.10 조례 제13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

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

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13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출석수업에 참석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10.>

④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10.>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육아시간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해당 월(月)에 속한 일(日)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속한 일(日)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하거나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3.1.10.>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제1232호, 2022.0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01호, 202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